

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
[노원구 자전거 문화센터]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
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8월 27일

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



1.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

임용 등급	임용 분야	임용 인원	근무 기간	근무예 정 부 서	담당직무 내용
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	노원구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 (행정)	1명	임용일로부터 1년 (주35시간)	탄소중립도시과	- 노원구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 - 주민참여사업 기획 및 운영 - 센터 시설 관리 및 자전거 시설물 관리

2. 법령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 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 및 제27조(신규임용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3 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29조의3 (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)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3. 응시 자격 요건

○ 응시 자격(공통) (※ 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

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- 마. 삭제 <2022. 1. 4.>
 - 바. 삭제 <2022. 1. 4.>
 - 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 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 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하는 비영리법인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- 응시연령 : 만 18세 이상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지역·성별 : 제한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○ 임용분야 응시 자격요건: 다음의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(※ 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※ 응시희망자는 자격 및 경력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(중복접수 불가)

구분(등급)	응시자격요건
필수요건 (라급)	1.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

※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에서 행정 분야의 실무경력

※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5항)

※ 경력증명서상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와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인정 (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, 명확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)

4.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

○ 임용기간 :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

※ 사업 기간 범위 내 근무 실적에 따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○ 근무조건 : 주 35시간, 주5일(월~금)/일 7시간

※ 해당 근무일은 자전거 문화센터 개관 전 근무시간으로 센터 개관 후 주말근무로 변경 예정

※ 근무시간은 7시간 범위 내에서 별도 명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음

○ 보수수준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임용등급에 상응하는 보수 범위 내에서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, 최초 채용 시에는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.

※ 주당 40시간 기준금액을 주당 근무시간(35시간)에 비례하여 책정

[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 관련)]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	근무 시간 적용시 기본연봉액
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62,096천원	44,296천원	38,759천원 (44,296천원X35/40)

-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- 공무원연금, 건강보험 가입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6. 9. 3.(목) ~ 9. 7.(월)(3일/주말제외)

나. 접 수 처 : 노원구청 탄소중립도시과 자전거도시팀

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※ 택배, 퀵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

- 방문접수는 근무시간(평일 09:00~18:00/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 내에 직접 제출

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※ 노원구 수입증지(수수료 라급 5,000원)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
※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일정(안)

구 분	일 정	비 고
시험공고	2026. 8. 27.(목) ~ 9. 7.(월)	구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응시원서 접수	2026. 9. 3.(목) ~ 9. 7.(월)	방문 접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6. 9. 11.(금)	개별통보
면접시험	2026. 9. 17.(목)	노원구청(별도안내)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6. 9. 21.(월)	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가. 1차 서류전형 : 개별 통보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고

- 접수된 응시원서 등 관련 제출서류 확인 후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 면접심사 :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대상자 개별 통보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고득점자로 하며, 관계법령에 따라 신체검사, 신원조회 및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며, 노원구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.

다. 면접심사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고
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사항)

○ 응시원서 1부(첨부1)

- 응시수수료 : 라급 5,000원 상당의 노원구 수입증지 (구청 2층 재무과에서 구매)

※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력서 1부(첨부2)

※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<http://www.nhis.or.kr> 발급, 보험가입 전체기간,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)등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 1부(첨부3)

○ 직무수행계획서 1부(첨부4)

○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(첨부5)
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6)

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첨부7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 1부

○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(원본)에 한해 인정

※ 근무기간, 근무시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기관 직인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, 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
※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
○ 졸업(재학)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

※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사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

※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○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

○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

7. 기타(유의) 사항

- 원서 접수 시 노원구 홈페이지(www.nowon.kr) - [채용공고] 에서 첨부파일 (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)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 바랍니다.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**적격자가 없을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**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(이 경우 시험 일정 등이 변경됨)
-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,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다.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-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: 본인이 희망할 경우,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.
- 문의 : 노원구청 탄소중립도시과 (☎ 02-2116-0632)